

## 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,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의 다음날(‘28.4.24.’)부터 정상 과세

### | 지방세법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)**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**제7조(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)**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52조(세율)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단서 신설> 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	제52조(세율) ① ----- -----. 다만, 연초(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)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### ※ 담배사업법 부칙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에서 「지방세법」 개정(‘26.4.24.시행)

**제47조(정의)**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담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
  - 나.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(煙草)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(삭제)
- 다.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